교직원여비규정 4-4-6

규정번호 4-4-6
제정일자 1997.4.29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총무회계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료·식비 및 준비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여비지급구분표(별표1,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대상별 지급구분은 아래와 같다.(개정 2015.06.15., 2017.02.27., 2018.08.27.,2024.7.24)

구분	대상자
제1호	총장
제2호	부총장
제3호	학부장, 실·처장, 부속기관장, 부학부장, 부처장 등
제4호	교수, 부교수, 조교수, 팀장
제5호	직원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교직원 및 연구원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4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우리대학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대학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관계 직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라 여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대학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여행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법정영수증)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하고, 회계관계 직원은 그 증빙을 확인한 후 별표1 국내여비지급표의 범위내에서 운임과 숙박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06.15)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제6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총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운 임

제7조(운임의 구분) 철도여행은 철도운임, 수로여행은 선박운임, 항로여행은 항공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은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제8조(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운임은 별표1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운임이 별도 책정되어 있을 시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개정 2015.06.15)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2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06.15)

제9조(실비운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실비를 지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의 제한) 학교 공용차량으로 여행할 때 또는 단체이동 여행시 전세차량으로 여행할 때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1조(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1 국내여비지급표에,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2 국외여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학교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 숙박을 요하지 아니하는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여행에 있어서는 (수도권여행)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도 지급할 수 있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여비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총장은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 추가 지급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근무지내 시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학교공용차량 이용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4장 퇴직자 사망자 등의 여비

제13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출장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시에는 전 직 또는 본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망자에 대한 여비) 공무여행 중 사망 시에는 출장지로부터 귀로의 소정여비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수학여행 인솔여비

제15조(수학여행 인솔여비)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비는 1학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정·부 책임자 2명에게 여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학과단위 운영경비 지원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7.24.)

제6장 보 칙

제1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45> <생략>

<46> 교직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①, 제8조②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47>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5조)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제8조 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비즈니스)	실비(상한액: 철도운임)	20,000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상한액: 철도운임)	20,000	실비	실비
제3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상한액: 철도운임)	20,000	실비(상한액 : 120,000)	25,000
제4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상한액: 철도운임)	20,000	실비(상한액 : 80,000)	25,000
제5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상한액: 철도운임)	20,000	실비(상한액 : 70,000)	20,000
제6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상한액: 철도운임)	20,000	실비(상한액 : 70,000)	20,000

(개정 2015.06.15)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표(제8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 달러($))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비즈니스)	실비	가 나 다 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389) 실비(상한액:289) 실비(상한액:215) 실비(상한액:161)	160 117 87 73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	가 나 다 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282) 실비(상한액:207) 실비(상한액:162) 실비(상한액:108)	133 99 72 61
제3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	가 나 다 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282) 실비(상한액:207) 실비(상한액:162) 실비(상한액:108)	133 99 72 61
제4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	가 나 다 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223) 실비(상한액:160) 실비(상한액: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제5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	가 나 다 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176) 실비(상한액:137) 실비(상한액: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제6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이코노미)	실비	가 나 다 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155) 실비(상한액: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개정 2015.06.15)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델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키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국외여비의 환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고시환율(외환은행 1회자 현찰 살 때)을 적용한다.